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피 해 자 ㅇㅇ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피진정인 ㅇㅇ시장

주 문

- 1. ㅇㅇ시장에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복무를 관리함에 있어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을 권고한다.
- 2. ㅇㅇ도지사에게 관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방법에 있어 관제요원들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 3. ㅇㅇ장관에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ㅇㅇ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인 관제요원 신규채용 시, 개인 영상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제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시 공무원이 관제요원의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CCTV를 통해 관제센터 내부를 24시간 촬영·녹화·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ㅇㅇ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관제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관내 설치된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관제요원들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실에서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는데, ㅇㅇ시 안전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상주하며 CCTV를 통하여 관제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ㅇㅇ시는 관제요원들로부터 개인영상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할 시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와 함께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상 동의를 강요한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CCTV로 관제요원의 근무실태를 24시간 촬영·녹화·저장하고, 다음 날 ㅇㅇ시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여 근무태도를 지적하는데, CCTV의 설치 목적은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 관리에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를 감시하고 근대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해자(ㅇㅇ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김ㅇㅇ)

CCTV가 사무실 내의 앞쪽에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얼굴 표정까지 촬영되는 관계로 카메라의 위치를 뒤쪽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제요원의 취침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CCTV가 근무시간 내내 정면으로 본인을 관찰하고 있어 야간에 동료직원들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잡담으로 보일까 두렵고, 허벅지나 간지러운 곳을 손으로 긁고 싶어도 다른 공무원들이 영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쉽게 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기도 하며, 괜히 나의 얼굴 표정이나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함에 반해, 관제요원들은 관제실 내에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으며,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실 내에 CCTV가 없어도 출입자 관리가 가능하다.

다. 피진정인

관제요원의 모니터링 업무가 지루하고 피곤한 것이지만,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제요원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관제요원 채용의 근본 취지가 훼손된다. 따라서 관제실 내 CCTV를 설치하여 관제요원들의 근무상황을보지 못하면 개인영상정보 유출방지나 근무 중 수면행위 등 근무태도를 관리할 수 없고, 관제센터 운영자체의 의미도 없다. 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CCTV로 근무실태 외에 스마트폰이나 기타전자 장비로 개인영상

무단 반출 여부 확인, 시설물 관리도 함께 하고 있다.

관제요원 채용 시 CCTV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 근로계약서와 개인영상정보제공동의서에 관제요원 본인이 서명을 한 것이고,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3명으로 24시간 내내 관제요원들과 같이 근무할 수 없고, 관제실과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CCTV를 통하지 않고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 또한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외부 유지보수 인력이 민간인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도 CCTV가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관제센터의 개인 영상정보 유출방지나 시설물 관리, 관제요원들의 안전과 근무태도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CCTV녹화영상을 확인해야 한다.

다. 참고인(ㅇㅇ시 통합관제센터)

oo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센터 복도, 관제실 출입구, 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보안 관리를 하고 있다. 관제요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관제실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고 예산 및 인력을확보하여, 용역업체 현장대리인, 경찰관 3명의 교대 근무를 통하여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굳이 CCTV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제요원들의 복무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CCTV 설치 안내문, CCTV 설치 사진, 개인영상정보 저장동의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근무실태 사실 확인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ㅇㅇ시 통합관제센터는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센터 확충 계획에 따라 2012. 8.에 개소하였고, 2017. 6. 현재 공무원 3명, 경찰관 1명, 기간제 근로 자인 관제요원 24명이 근무 중이다. 관제요원들은 4조 3교대(1개조 6명, 1일 8시간씩 3개조)로 근무하고, 이들의 주요 임무는 관내 설치된 CCTV 60여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연락하는 것이다.

나. 통합관제센터 건물 내에는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사무실과 영주시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각종 장비가 있는 사무실이 구분되어 있고, 통합관제센터 내의 관제요원 사무실 내에는 앞쪽 천장에 CCTV 1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의 움직임이 정면에서 24시간 촬영·녹화되고 있으며 영상은 30일간 저장된다. 카메라는 200만 HD-SDI 화소로 줌 기능·저장 기능이 있으며, 녹화된 개인영상자료는 영주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관제요원 근무태도 확인을 위해 상시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다. 관제요원의 근로계약서상 "관제요원이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 시 관제요원 자격 박탈 및 근로계약 해 지"가 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피진정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인 영상정보 저장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동의서상 수 집·이용목적은 "관제요원 관리감독 및 근무상황 관리"로 명시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녹화된 개인영상자료를 열람하여 관제요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2016. 7. 1. 관제요원 김ㅇㅇ가 근무 중 취침을 이유로, 2016. 9. 15. 진정인이 근무 중 장시간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들로부터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각 제출받았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결정례

「헌법」 제10조, 제17조는 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들헌법상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정보의 정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 3조 제1항과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사업장 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전자감시장비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자감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절차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6. 12. 27. 결정,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제도 개선 권고).

나. 피진정인의 관제실 내 CCTV설치·운영을 통한 관제요원 근태관리 행위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인적·물적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유지할 책임이 있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이에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관제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 CCTV를설치하여, 개인영상 무단 반출 여부 확인, 시설물 관리 목적과 함께 관제요원의 근무태도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CCTV를 활용하는 방식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근거와 그 목적의 정당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절성,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려야 하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최소한의 정보수집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관제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와 함께 "관제요원 관리감독 및 근무상황 관리" 목적으로 개인영상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고 "거부 시에는 관제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음"이 명시된 '개인영상정보 저장 동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위 동의서에 영상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관제요원들에게 제시한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의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피진정인이 별도로 고지한 바도 없다. 또한 관제요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근태관리 목적의 CCTV촬영 및 저장, 이용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은 곧 취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관제요원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근거로 관제요원들에 대해 24시간 CCTV로 촬영·저장하고 이 영상을 이들의 근대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관제요원의 근태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촬영 및 저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경찰, 공무원 등이 관제요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관제요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근대 관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고, 실제로 참고인의 경우 CCTV를 활용하지 않고 경찰 등이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통합관제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

더구나 관제요원의 주 업무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CCTV가 촬영하는 장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만 주시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관제요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근무태도 확인을 명목으로 얼굴 표정,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소한 신체 움직임, 야간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품을하는 등의 모든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저장되어 재생 또는 상시적 관찰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피진정인이 녹화된 영상자료를 근거로 관제요원들의 근무태도를 지적하거나 확인서를 제출받아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제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다른 근태관리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CCTV를 이용하여 24시간내내 관제요원들을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8.

위원장 이경숙

위 워 최이우

위 원 한수웅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ㆍ제한)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 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제42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3.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다.
- 6. "곳곳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 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 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 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 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2013. 4. 행정자치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인력 확보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워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워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관제요원의 근무)

-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